

2026년 『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』 모집 공고(안)

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일·생활 균형, 안전일터 조성 등 노사상생 문화를 구축한 우수기업을 선정,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지역 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6년 「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」 선정 계획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우수한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07. 15.

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명 : 2026년 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

□ 사업목적

- 노·사 간 상생 문화를 조성한 우수기업을 선정·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전역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상생 문화 확산 도모

□ 사업주관

- (수행)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
- (지원)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, 고용노동부, 경기도, 경기경영자총협회

□ 사업절차



□ 신청 대상

-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기업

* ❶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공기업·대기업은 제외

❷ 기존 선정 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 유효기간(2년) 내 재신청 불가

- 다음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신청자격 제외대상

- ① [근로기준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,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
- ② [산업안전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③ [중대재해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
- ④ [공정거래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·단체
- ⑤ [납세의무]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·단체
- ⑥ [장애인고용의무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)
- ⑦ [사회적몰의] 최근 3년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몰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(재판)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□ 신청 기간 및 방법(안)

- 신청기간 : 2026. 7. 15(수) ~ 7. 29(수) 24:00까지

-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 접수

▲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(www.ggnosa.org) 공고문 → 신청서류 작성 → 접수

▲ 경기경영자총협회(www.gyef.or.kr) 공고문 → 신청서류 작성 → 접수

- 신청서류

연번	구비서류	제출방법
1	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(서명 날인 스캔파일)	이메일 접수 (eogurrkd@gyef.or.kr)
2	개인정보, 법위반 사실 여부 등 동의서	
3	사업자등록증	
4	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
5	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	
6	4대보험 가입자 명부	
7	노사상생 문화·제도, 일·생활 균형 활성화 등 관련 증빙자료	
8	평가지표별 증빙자료(p.3~4 - 심사기준 참고)	

□ 심사 절차

- (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)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별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(공고일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에도 선정 제외)
- (신청서류 검토) 누락 서류 등 검토,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함

* 서류심사 시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可

□ 평가 방법

- (정량평가) 70점

소항목 지표	세부사항
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(15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횟수 기재 : ____ 회 - 프로그램명(일시, 참여자수, 주요내용 기재) (예) 노사파트너십 행사 / 노사화합 선언행사 / 노사워크숍 / 등반대회 / 체육대회 횟수 등
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정도 (15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건수 기재 : ____ 회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노력을 위한 사례,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(예)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/ 교육훈련 / 일자리 나누기 실천사례 / 고용안정 실천사례 / 공정한 인사관리 /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례 등
열린경영 및 노동자참여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횟수 기재 : ____ 회 - 회의명(일시, 참여자수, 주요내용 기재) (예)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간담회 / 경영설명회 / ESG경영 실천사항 등
노동자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건수 기재 : ____ 건 - 노동자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(예) 기숙사, 휴게실, 체육시설 운영 및 투자 / 동호회, 건강검진 지원 등
일·생활 균형 도입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건수 기재 : ____ 건 - 일·생활 균형 활성화 관련 제도 도입 (예) PC-OFF제 운영, 일·생활 균형 관련 사업 참여실적 (컨설팅, 인프라 구축, 장려금,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선정 등), 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반영, 관련 우수기업 선정 자료 등
안전보건 관리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건수 기재 : ____ 건 -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 (예) 안전교육, 위험성 평가, 자체 산재예방 활동, 안전시설 투자, 안전 캠페인, 안전관리 성과 등

○ (정성평가) 30점

소항목 지표	세부사항
무분규 및 노사갈등 예방 노력 (10점)	○ (노조 有 사업장) 최근 1년('25.7.15 ~ '26.7.14) 무분규 및 노사갈등 예방 노력 정도 요약기재 (예) 파업발생 여부, 노사갈등 예방 활동, 무분규 유지 노력, 상생추진 활동 등 ○ (노조 無 사업장) ('24.7월 이전과 비교) 노사협력의 노력 정도, 향상도 요약기재 - 협력사업의 노사공동 추진 노력, 노사협력의 진전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) 익명 제안함 운영, 사내 소통게시판 운영, 노사화합 워크숍(소통행사), CEO-직원 간담회, 직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,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
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지역 사회봉사, ESG 경영,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실천사례 요약기재 (예) 기업이익 사회적 환원, 사회봉사활동, 협력사 상생협약, 윤리·인권경영 및 신고제도 운영, 지역사회 봉사·기부 증빙 등
노사상생 관련 우수사례 (10점)	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노사협력, 상생사례 등 우수사례 요약기재 (예) 노사관행 개선, 고용창출·안정 노력, 조직문화 개선 TF 운영, 노·사 공동교육(상생문화 확산), 노·사 협력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자료, 노·사 공동선언문(협약서), 직원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사례, 복리후생 확대 자료 등 ○ 최근 2년('24.7.15 ~ '26.7.14) 일·생활 균형 활성화 우수사례 요약기재 (예) 유연근무제 도입, 주4.5일제 시행, 지원제도 활용 등

4

우수기업 선정 일정 및 인센티브

□ 우수기업 선정 일정

○ (선정시기) 2026. 8월 中

- ▲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5개 기업 선정(개별통지)

○ (시 상) 2026. 8 ~ 9월 中 (예정)

□ 우수기업 혜택

○ 선정기업(5개 기업) 1개소별 경기도지사 인증패 및 인센티브 제공

- ▲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 우대(가점 5점), 신용보증 우대(가점 1점)
- ▲ 보도자료, 사례집 등 선정기업 홍보 지원 등

- ☐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☐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함
 - ▲ 결격사유, 허위서류 제출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취소함
 - ▲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‘중대산업재해’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‘중대재해’가 발생하여 ‘기소의견’으로 송치된 사업장
 - ▲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

- 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
 - (연락처) 031) 289-3498
 - (이메일) eogurkd@gyef.or.kr
 - (홈페이지) www.ggnosa.org